

제천시 이·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
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 안 이 유

-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조항 삭제 및 현·실정에 맞지 않는 반사회 운영사항 보완
- 이·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상호 경쟁 유발을 통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도모

2. 주 요 내 용

- 명예반장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7조)
- 반사회 운영 사항 보완 (안 제8조)
- 반사회 운영평가 보완 (안 제9조)
- 이·통·반장 편의제공 조항 신설(안 제13조)

3. 근 거 법 령 : 붙임

4. 의 안 전 문 : 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첨 부 : 입법예고 사본 1부.

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반상회의 날 운영”을 “이·통·반 회의의 날 운영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중 “반상회”를 “이·통·반 회의”로, “임시반상회”를 “임시 이·통·반 회의”로 하며, 동조제2항제4호중 “반원”을 “이·통·반원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운영평가) 이·통장협의회 및 이·통·반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·통·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이·통장협의회 및 이·통·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이·통장협의회 및 이·통·반을 선정·포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·통·반장 사기양양 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“반상회”를 각각 “이·통·반 회의”로 한다.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편의제공) 시장은 이·통·반장이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명예반장) ①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명예반장은 반내 거주 저명인사로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·통장의 의견을 들어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명예반장은 반장을 도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2.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좌담회 주도 3. 반원의 반상회 참여 유도 4. 반원의 여망사항 집약조정 5. 반장의 활동에 대한 고문 역할 	<p><삭 제></p>
<p>제8조(반상회의 날 운영) ①반상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 략) 4. <u>반원</u> 여망사항 토의 5. (생 략) 	<p>제8조(이·통·반 회의의 날 운영) ①이·통·반 회의----- -----임시 이·통·반 회의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이·통·반원</u> ----- 5. (현행과 같음)
<p>제9조(반상회 운영평가) 반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운영평가) 이·통장협의회 및 이·통·반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·통·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이·통장협의회 및 이·통·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이·통장협의회 및 이·통·반을 선정·포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·통·반장 사기양양 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건의사항 처리) ①읍·면·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.</p> <p>②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건의사항처리)①----- <u>이·통·반 회의</u>----- ----- ②-----<u>이·통·반 회의</u> -----</p> <p>제13조(편의제공) 시장은 이·통·반장이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----- -----</p>

근거 법령

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 2006.12.20 법률 제8069호]

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·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"지방의회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「주민투표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9.8.31, 2004.1.29, 2006.1.11>

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, 이를 폐치·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8.31, 2005.3.24, 2006.1.11>

④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동·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⑥제5항의 행정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

지방자치법시행령

[일부개정 2006.10.17 대통령령 제19702호]

제44조 (이장의 임명)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·면의 행정리에
는 이장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
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③읍장·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
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7.6>

제천시 공고 제 2007 - 21호

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07. 1. 5.

제 천 시 장

1. 조 례 명 : 제천시 이·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조항 삭제 및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반상회 운영 사항 보완
- 이·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상호 경쟁 유발을 통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도모

3. 주요내용

- 명예반장 관련 조항 삭제 (제7조)
- 반상회 운영 사항 보완 (제8조)
- 반상회 운영평가 보완 (제9조)
- 이·통·반장 편의제공 조항 신설(제13조)
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24일까지 (참조 자치행정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0 - 5135, FAX 640 - 5129, 담당자 임명규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